

느티나무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19.09.16., 개정 2020.03.16. 개정 2022.03.04. 개정 2026.03.20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과 홍성군이 위탁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인 (공립)느티나무 어린이집(이하 “어린이집”이라 한다)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- ①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- ② 어린이집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
- ③ 기타 홍성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운영위원회는 글로벌 대외교류처장, 총무처장, 사회복지과 학과장, 어린이집 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9.09.16. , 2020.03.16., 2022.03.04., 2026.03.20.>
- ② 운영위원회는 글로벌 대외교류처장이 의장이 된다.<개정 2019.09.16., 2020.03.16., 2022.03.04., 2026.03.20.>
-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4조 (임기)

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회의 및 의결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③ 회의는 재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 (회의록 작성)

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1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 (의결된 사항 이행)

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 (수당)

운영위원에게는 수당과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3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9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3.1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03.20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